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창조벤처단지 내 제작공간 및 융·복합 공연장 구축을 위한

후원약정서

CJ그룹(이하 '후원기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집행기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수혜기관')은 문화산업의 진흥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문화창조벤처단지 내 제작공간 및 융·복합 공연장(이하 '공연장 등') 구축을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공연장 등' 구축을 통한 문화산업의 진흥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상호 충실하게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정기관의 주요임무) 본 약정의 약정기관 및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원기업'(CJ그룹)

'공연장 등' 구축 및 시설장치(이하 '후원물품 등')를 후원하는 기업을 말하며, '후원기업'은 적정 용도로 구축기간 내 완료 후, '후원물품 등'을 기부하고, 후원 관련 관리를 '집행기관'에 위임한다.

2. '집행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물품 등'을 집행·관리하는 단체를 말하며, '후원기업'과 '수혜기관'의 후원 관련 전반적인 활동을 지원한다.

3. '수혜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

'후원물품 등'의 기부를 받는 단체를 말하며, '수혜기관'은 '후원물품 등'을 '집행기관'으로부터 제공받고, '후원물품 등'에 대한 최종 검수조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한다.

제3조(후원내용) '후원기업'이 후원하는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원내역 : '공연장 등' 구축에 따른 '시설장치(물품) 후원' 전반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시설장치' 장부가액 기준 법정기부금)
2. 집행용도 : 문화산업의 진흥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문화창조벤처 단지 내 제작공간 및 융·복합 공연장 구축
3. 구축기간 : 2015년 8월 1일 ~ 11월 8일(약 3개월)
4. 구축장소 : '수혜기관'이 임차한 공간(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9층 및 지하1층~1층)
5. 운영내용
가. 미디어, 연극, 뮤지컬,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을 수용하는 실험형 융복합 공연 공간
나. 국내외 창작자, 관람객, 관광객들의 니즈에 맞춘 가변형 문화창조 공간
다. 관광객 대상 한국 문화 체험, 정보공유가 가능한 홍보 및 오리엔테이션 공간
6. 기타

후원내용 기부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는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한 점유권은 수혜기관에 있으며 이에 대한 제세공과금, 관리비 부담 및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은 수혜기관에게 있다.

제4조(후원물품 등의 기부절차) 약정기관 간 '후원물품 등'의 기부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후원기업'은 기부신청서를 '공연장 등'의 구축 완료 후 7일 이내에 '집행기관'에 제출하고, '집행기관'에서 추가 보완서류를 요구할 경우 위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후원물품 등'의 기부와 관련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한다. 단 '후원물품 등'이 단일기업이 아닌 다자기업의 공동출자로 기부되는 경우에는 다자간 계약을 진행하도록 한다. '후원기업'이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후원물품에 대한 비용을 공동으로 출자한 기업의 기부금신청서 각 1부
- 나. 후원물품에 대한 장부가액확인서 1부
- 다. 후원물품에 대한 도면 및 사진 1부

2. '후원기업'은 '공연장 등'의 구축 완료 후 7일 이내 '후원물품 등' 최종 관련 자료를 '집행기관'에 제출한다. 단 '후원물품 등'의 목록에 변경이 있을 시에는 그 사유와 변경된 목록을 별도로 제출한다.

3. '집행기관'은 제2항에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접수 후 7일 이내 '후원물품 등'의 목록 또는 변경목록을 '수혜기관'에게 통보한 이후, 기부영수증을 '후원기업'에게 발급한다.

4. '수혜기관'은 '후원물품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검수·확인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집행기관'에 제출한다. '집행기관'은 이를 '후원기업'에 통보한다.

제5조(협조 및 의무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협조한다

1. '후원물품 등'과 관련한 행사의 개최, 언론보도 등의 주요사항 시행 시 사전에 '후원기업', '집행기관', '수혜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2. '집행기관'과 '수혜기관'은 '공연장 등'의 구축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구축기간 중에 현장을 방문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후원기업'에게 요청·확인할 수 있다.

3. '수혜기관'은 '후원물품 등'의 수혜 이후, '후원기업'의 요청에 따라 '후원물품 등' 운영과 관련된 제반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성실이행 의무) 약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 '후원기업'은 '공연장 등' 구축을 신의와 성실로써 완료하고, '후원물품 등'을 후원하는데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의 부속서로 별도 시행한다.

가. 건축허가 및 관계법령, 지침, 규정, 예규 등을 준수하고 구축하여야 하며, 감리자를 선임하여 건물 사용승인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후원물품 등'에 대한 운영지침 및 매뉴얼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여 '수혜기관'이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2. 약정기관은 제3조 각항의 사업내역 및 공간구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후원기업'과 '수혜기관'은 '공연장 등' 구축 수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집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약정해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혜기관' 또는 '후원기업'은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정 해지의 원인이 되는 경우 '수혜기관' 또는 '후원기업'은 '공연장 등' 구축과 관련된 제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 '수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기업'과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후원기업'이 사업을 중지하거나, 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집행기관'이 인정을 하는 경우
3. 위 제5조 제2항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

제8조(기타사항)

1.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 부속서로 시행한다.
2. 이 약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분쟁에 따른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3. 약정기관은 이 약정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당사자의 법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는 '후원물품 등'의 기부절차 완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별 첨】 부속서 : 약정기관 간 책임과 역할

이 약정의 성립과 성실한 이행을 증명하기 위해 약정서 3부를 작성, 약정기관이 각각 서명 날인하여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9월 10일

CJ 제일제당

대표이사

김철하



CJ 프레시웨이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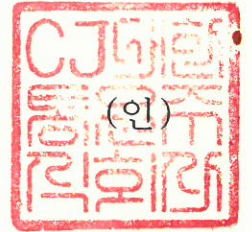
강신호



CJ 대한통운

대표이사

양승석



CJ 오쇼핑

대표이사

김일천



CJ 올리브네트웍스

대표이사

허민희



CJ 헬로비전

대표이사

김진석



CJ CGV

대표이사

서정



CJ E&M

대표이사

김성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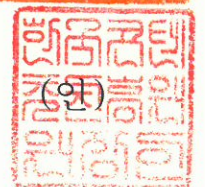
박명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송성각



【부속서 : 약정기관 간 책임과 역할】

문화창조벤처단지 내 제작공간 및 융·복합 공연장(이하 '공연장 등') 구축을 위한 후원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약정기관 간 상호 분쟁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여 준수하도록 한다.

- 다 음 -

1. 약정기관 간 책임과 역할을 아래와 같이 명확히 하여 상호 적극적으로 준수한다.
 - ① CJ그룹(후원기업) : '공연장 등' 구축 및 '후원물품 등' 기부에 따른 제반사항
 - ② 한국콘텐츠진흥원(수혜기관) : '공연장 등'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
 - ③ 한국문화예술위원회(집행기관) : '후원기관'과 '수혜기관'의 '후원물품 등' 집행 및 관리
2. '후원기업'은 '수혜기관'의 임차공간 내(서울시 중구 청계천로40 다동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9층 및 지하1층~1층) '공연장 등'을 구축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구축공사를 개시하기 전에 '수혜기관' 및 '수혜기관' 임차공간의 건물주(이하 '건물주'라 한다)에게 개요 및 설계도면,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상호 협의 후 구축공사를 개시한다.
 - ② 후원약정서 제3조 3항의 구축기간 내 공사장 관리는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노무자, 기타 출입인의 감시 및 풍기 위생단속 / 화재, 도난 및 추락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 작업재료, 작업설비의 정리, 보관 / 현장의 청소 및 주변정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관리부실에 따른 구축 공사장 내의 모든 안전사고는 '후원기업'이 책임을 진다. 다만 기부절차 완료 후에는 화재 등 관리책임은 '수혜기관'이 지기로 한다.
 - ③ 구축 현장의 안전 및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 및 소방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고 이를 모든 작업원에게 수시로 교육하여 숙지시킨다.
 - ④ 구축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인접한 제 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제반시설을 하여야 하며, 기존 공작물 등에 손해를 가하였을 시는 '후원기업'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사후처리를 한다.
 - ⑤ 외부간판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건물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외부 간판의 설치(공연장용 1개소)에 소요되는 비용은 '후원기업'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⑥ 구축 및 '후원물품 등'의 지원절차 완료 후 임차공간의 수선 및 유지관리를 위해 '후원기업'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 하며, '수혜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시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⑦ 통신시설 및 제작장비 설치에 따른 관계기관의 허가 필요시 '후원기업'의 책임 하에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 후 '건물주' 및 '수혜기관'에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⑧ 구축공간 내 특수시설물(제작장비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측기기(지상 9층, 지하1층 공연장 전기계량기)를 부착하여야 하며, 구축기간 내의 제세공과금은 '후원기업'이 부담한다.
 - ⑨ 구축 완료 후 모든 출입문의 열쇠는 도면과 함께 위치를 지정하여 인계되어야 한다.